



Intertek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Services (Korea)

본 계약 조건들은, 제안서, 견적서 또는 수수료 요금과 함께, 계약서에 수록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위해 귀하(고객)와 인터텍(인터텍) 간에 체결된 본 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1. 해석

- 1.1 본 계약서에서 다음의 단어들과 문구들은 문맥상 별도의 의미가 없는 한 다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a) 계약서라 함은 인터텍과 고객간에 체결된 본 계약서를 의미한다;
 - (b) 요금이라 함은 제 5.1조항에 명시된 요금을 의미한다;
 - (c) 기밀 정보라 함은 표현된 형식이나 방법과 무관하게 (a) 본 계약서에 따라 공개된, 또는 본 계약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중에 공개된 모든 정보, 그리고 (b) (i) 문서로, 전자적으로, 시각적으로, 구두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지만 공개 당사자가 공개 시점이 기밀이라고 표시한, 스탬프를 찍은, 또는 확인한 모든 정보, 그리고/또는 (ii) 수령 당사자가 받았으나 합리적으로 기밀 정보라고 간주해야만 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
 - (d) 지적재산권(들)이라 함은 저작권, 상표(등록된 또는 등록되지 않은), 특허, 특허 출원(특허출원권 포함), 서비스 마크, 의장권(등록된 또는 등록되지 않은), 영업 기밀,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유사한 권리들을 의미한다;
 - (e) 보고서(들)이라 함은 제 2.3조항에 명시된 것들을 의미한다;
 - (f) 서비스라 함은 관련된 모든 인터텍 제안서, 고객 구매 주문서, 또는 인터텍 송장(있는 경우)에 명시된 서비스들을 의미하며, 이에 어느 한 보고서에서 인터텍이 제공하는 서비스들로 이루어지거나 포함될 수도 있다;
 - (g) 제안서라 함은 인터텍이 서비스들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제공한 제안, 견적 또는 수수료 견적서를 의미한다;

1.2 본 계약서의 제목들은 본 계약서를 해석하는데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2. 서비스

- 2.1 인터텍은 본 계약서의 계약 조건들에 의거하여 인터텍이 작성해 고객에게 제출한 제안서에 명백하게 명시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 2.2 본 계약서의 계약 조건들과 제안서가 상충되는 경우, 제안서 조건들이 우선한다.
- 2.3 본 계약서 및 인터텍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작성한 모든 각서, 실험실 데이터, 계산, 측정치, 견적서, 노트, 증명서, 그리고 그 밖의 자료들과 인터텍이 수행한 작업 또는 서비스들의 결과를 설명한 모든 형태의 현황 요약표 또는 기타 주 또는 받은 모든 서신들(보고서(들))에 근거하여 인터텍이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오로지 고객의 이용 및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 2.4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터텍이 제 3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인터텍은 그러한 보고서를 해당되는 제 3자에게 전달할 권한을 확정적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본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고객의 지시가 있는 경우 또는 인터텍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황, 상관습, 또는 상관례에 함축되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한다.
- 2.5 고객은 인터텍이 제공한 서비스들 그리고/또는 작성한 보고서들이 제안서와 관련하여 그리고 고객의 특별한 지시에 따라서 또는 이러한 지시가 없었을 경우, 다른 유관한 상관습이나 상관례에 따라서 고객과 합의한 작업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이 밖에도 고객은 서비스들이 시험, 검사, 또는 인증된 제품, 자재, 서비스, 시스템 또는 공정에 적용할 수도 있는 모든 표준들이 반드시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한다. 고객은 인터텍이 작성한 보고서의 신뢰도가 서비스를 이행할 당시에 존재한 사실, 정보, 문서, 표본 그리고/또는 기타 자료들에 대한 인터텍의 검토 그리고/또는 분석이 실려있는 보고서에 기술된 사실 및 진술에 한정된다는 것을 이해한다.
- 2.6 고객은 인터텍 보고서에 바탕으로 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취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인터텍은 물론 인터텍 관리자들, 직원들, 대리인들, 또는 하도급업체들도 고객 또는 제 3자가 인터텍 보고서를 바탕으로 취한 또는 취하지 않은 모든 조치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2.7 본 계약서에 근거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함에 있어서, 인터텍은 다른 사람에게 대한 고객의 의무를 또는 고객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의무 이행을 약화시키지도 않고, 폐기하지도 않고, 떠맡지도 않는다.

3. 인터텍의 보증

- 3.1 인터텍은 고객에 한해서만 다음 사항들을 보증한다:
 - (a) 인터텍은 본 계약서를 체결할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본 계약서를 체결하는 날자에 유효한 관련 법률 및 규정들을 준수할 것이며;
 - (b) 유사한 상황 하에서 유사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다른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행사하는 수준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 일관된 방법으로 서비스들을 이행할 것이며;
 - (c) 인터텍은 제 4.3(f)조항에 따라 고객에게 인터텍에게 제시한 모든 안전 규정들과 규정들 그리고 기타 합리적인 보안 요건들을 고객의 부지에서 인터텍 직원들이 준수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며;
 - (d) 서비스들과 관련해 만든 보고서들이 제 3자의 법적 권리들(지적재산권 포함)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이 인터텍에게 제공한 정보, 표본, 또는 기타 관련 문서들을 바탕으로 인터텍이 조치를 취한 결과 야기된 직, 간접적 청화에 대해서는 이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 3.2 제 3.1(b)조항에 명시된 보증을 위반하는 경우, 인터텍은 자체 비용으로 인터텍의 이행 결함을 수정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즉 원래 이행했어야 하는 서비스를 이행해야 한다.
- 3.3 인터텍은 어떠한 명시적 또는 암묵적 보증도 하지 않는다. 법률 또는 관습법(상품성이나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에 대한 암묵적 보증을 포함해-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이 암시하는 기타 모든 보증들, 상태들, 그리고 그 밖의 다른 조건들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한, 본 계약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터텍(인터텍의 대리점, 하도급업체, 직원, 또는 기타 대리인들 포함)이 제공한 어떠한 성과, 인도물, 구두 또는 기타 정보 또는 조건도 새로운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기 제공된 보증의 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

4. 고객의 보증과 의무

- 4.1 고객은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 (a) 고객은 본 계약을 체결할 그리고 스스로 서비스 제공을 조달할 능력과 권한이 있으며;
 - (b) 고객은 다른 사람 또는 기업을 대신한 에이전트 또는 브로커로서가 아니라 또는 기타 다른 대리인 자적이 아니라 자신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근거하여 서비스 제공을 받고 있으며;
 - (c) 고객(또는 고객의 에이전트 또는 대리인들)이 인터텍(인터텍의 에이전트, 하도급업체, 직원 포함)에게 제공한 정보, 표본, 그리고 관련 문서들이 진실이고, 정확하며, 완벽할 뿐만 아니라 오도하게 만드는 내용이 전혀 없으며, 고객은 또한 인터텍이 고객이 제공한 정보, 표본, 또는 그 밖의 다른 문서들과 자료들(이것들의 정확성과 완벽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의무가 없다)에 의존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을 알고 있으며;
 - (d) 고객이 인터텍에게 제공하는 표본들을 요금 선납 방식으로 발송할 것이며, 고객이 별도로 협의하지 않는 한, 시험 후 30일 이내에 고객(고객의 비용으로)이 표본들을 회수할 것이며, 고객이 이 표본들을 주어진 30일 기한 내에 회수하지 않는 경우, 인터텍은 그 표본들을 고객의 비용으로 파기할 권리가 있으며;

- (e) 고객이 인터텍에 제공한 모든 정보, 표본, 또는 그 밖의 다른 문서들(증명서 또는 보고서 등 -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의 법적 권리들(지적재산권 포함)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보증한다.
- 4.2 제공된 서비스들이 제 3자와 관련된 경우, 고객은 제 3자가 보고서나 서비스 해택을 받기 전에 그리고 이것들을 받는 전체 조건으로 본 계약서 조항들과 제안서를 인정하고 동의하도록 해야 한다.
- 4.3 이 밖에도 고객은 다음 사항들에 동의한다:
 - (a)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는데 있어서 그리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고객을 대신해서 인터텍에게 업무를 지시할 그리고 고객에게 계약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시할 서비스 담당 관리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인터텍에 협조해야 한다;
 - (b) 인터텍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비용으로,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모든 표본, 정보, 자료, 또는 기타 문서들을 인터텍(인터텍 에이전트, 하도급업체, 그리고 직원 포함)에게 제공해야 한다. 고객은 제공된 표본들이 일부 필요한 시험 과정을 밟는 중에 손상되거나 파손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변경, 손상, 또는 파손에 대해 인터텍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고 면제할 것을 약속한다;
 - (c) 고객은 시험할 표본들/장비는 물론 가능한면 연결장치들, 퓨즈 링크 등 -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특정한 품목들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
 - (d)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인터텍에게 지시사항 및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 (e) 인터텍(인터텍 에이전트, 하도급업체, 그리고 직원 포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합리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는 고객의 작업 장소에 그리고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른 장소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 (f) 인터텍이 서비스 이행을 위해 작업 장소에 들어가기 전에, 서비스가 제공될 장소와 이와 관련된 다른 장소들에 적용될 수도 있는 안전 보건 규정들과 규정들 그리고 합리적인 보안 요건들을 인터텍에게 통보해야 한다;
 - (g) 고객이 전달한 물품의, 또는 작업 장소에서 사용하는 또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공정이나 시스템의 위험성, 안전성, 또는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들에 대해 인터텍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한다;
 - (h) 무역이 제한 또는 금지되어 있는 국가로 또는 그 국가로부터 제품, 정보, 또는 기술을 수출/수입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해, 제공할 예정인 서비스들에 적용될 수도 있는 수입/수출 제한 규정들을 사전에 인터텍에게 통보해야 한다;
 - (i) 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 증명서 유효 기한 중에 증명서의 정확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인터텍에게 고지해야 한다;
 - (j) 서비스와 관련된 법률 및 규정들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허가 및 동의를 획득하고 유지해야 한다;
 - (k) 본 계약에 근거하여 인터텍이 발행한 보고서들 오도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해당 보고서 진위를 배포해야 한다
 - (l) 어떠한 경우에도, 보고서나 초록의 내용, 보고서 발췌문이나 일부를 인터텍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배포하거나 발표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 (m) 고객이 제작한 광고 및 홍보 자료들 또는 문구들이 인터텍이 제공한 서비스들에 대해 거짓 또는 잘못된 인상을 주어서는 안된다.
- 4.4 인터텍은 본 계약을 위반하지도 않을 것이며 고객이 제 4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계약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해서 고객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인터텍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객은 제 5조에 따라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다.
- 5. 요금, 대금 청구 및 대금 지급
- 5.1 고객은 제안서에 명시된 요금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고려한 요금을 인터텍에게 지급해야 한다(요금).
- 5.2 요금에는 서비스 제공에 따르는 각종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인터텍이 유효한 대금 청구서를 발행하는 경우, 고객은 법률이 규정한 세율과 방법으로 요금에 해당 세금을 지급해야 한다.
- 5.3 고객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터텍이 사용한 경비들을 인터텍에게 변제하기로 동의하며 요금 표본들의 운임 또는 관세를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동의한다.
- 5.4 요금이라 함은 본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에 대해 고객이 지급해야 하는 모든 수수료를 의미한다. 인터텍이 시행한 추가 작업에 대해서는 투입 시간 및 자료 기준으로 요금을 청구한다.
- 5.5 인터텍은 고객에게 요금 및 경비(있는 경우)를 청구하며, 고객은 청구서 수령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 5.6 만약 지급 기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터텍은 미지급금에다가 대금 정상 지급일부터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 HSBC 은행의 기본 이율에 3% 이율을 더한 이자를 붙여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고객은 이를 지급해야 한다.
- 6. 지적재산권 및 데이터 보호
- 6.1 본 계약 체결 이전에 한 당사자에게 속해있던 모든 지적재산권은 그 당사자에게 그대로 귀속된다. 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도 지적재산권을 일방 당사자로부터 타방 당사자로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6.2 어떤 이유든지 간에 고객이 "인터텍"이라는 이름 또는 인터텍의 상표 또는 브랜드 명을 사용하여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텍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인터텍 상표 또는 브랜드 명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인터텍은 이러한 무단 사용이 있는 경우 즉시 본 계약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 6.3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고객은 인증 마크를 사용할 때 국내 및 국제 법률과 규정들을 준수하기로 동의하고 인정한다.
- 6.4 인터텍이 본 계약에 의거하여 산출한 보고서, 문서, 그래프, 차트, 사진, 또는 기타 자료(매체와 무관하게)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은 인터텍에게 있다. 고객은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 해당 보고서, 문서, 그래프, 차트, 사진, 또는 기타 자료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 6.5 고객은 인터텍이 보고서(인터텍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든 인도물 포함)를 작성 또는 제공하는 동안 그리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생겨날 수도 있는 개념, 아이디어, 인도물에 대하여 모든 소유권을 가지는 것에 동의하고 이를 인정한다.
- 6.6 인터텍은 1998년 데이터보호법 조항 등 -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모든 법률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인터텍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 데이터를 가공하거나 이에 접근해야 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보안을 위해 (그리고 해당 데이터의 무단 또는 불법적인 가공, 사고 손실, 파손 또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 7. 기밀 유지
- 7.1 발방 당사자(수령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타방 당사자(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획득한 경우(본 계약 체결일 전 후와 무관하게), 제 7.2조항~제 7.4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 (a) 자신의 기밀 정보를 취급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의 의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기밀 정보를 기밀로 취급해야 하며;



- (b) 기밀 정보를 본 계약에 근거한 의무를 이행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그리고
 - (c)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기밀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
- 7.2 수령 당사자는 “꼭 필요한 것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다음 사람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 (a) 기밀 약속을 지키겠다고 보증한 변호사 및 법정 감사관들;
 - (b) 업무상 규제 또는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규제 기관;
 - (c) 수령 당사자의 임원, 관리자, 또는 직원. 단, 수령 당사자는 해당자에게 제 7.1조항에 근거한 의무를 고지해야 하며 해당자가 기밀 정보에 대하여 제 7조에 명시된 의무와 동일한 정도의 기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 (d) 수령 당사자가 인터택인 경우, 그 자회사, 계열사, 또는 하도급업체들에게도 상기와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 7.3 제 7.1조항 및 제 7.2조항 규정들은 다음 경우에 기밀 정보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수령 당사자가 공개 당사자로부터 정보를 받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정보로 이의 사용이나 공개에 제한이 없는 정보;
 - (b) 제 7조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공개적으로 다 알려진 지식;
 - (c) 해당 정보를 합법적으로 획득한 그리고 해당 정보의 공개 제한 의무가 없는 제 3자로부터 수령 당사자가 해당 정보를 받은 경우; 또는
 - (d) 수령 당사자가 관련 기밀 정보에 접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7.4 수령 당사자는 법률, 규제 당국 또는 수령 당사자가 소속되어 있는 증권 위원회의 규칙이 요구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 당사자의 기밀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단, 수령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서면으로 즉시 공개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가능하면, 공개 당사자가 적절한 법적 수단을 통해 공개를 막을 수 있는 합리적 기회를 주어야 한다.
- 7.5 각 당사자는 각자의 직원, 에이전트, 그리고 대리인들이 제 7조에 근거한 의무들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인터택의 경우에는 하도급업자들이 규정을 지킬도록 해야 한다).
- 7.6 공개 당사자가 공개한 기밀 정보에 대해서는 지적재산권 라이선스가 주어지지 않는다.
- 7.7 보관기록저장장치(archival storage)의 경우, 고객은 인터택이 그 품질 보증 과정이 요구하는 또는 관련 인증 기관의 시험 및 인증 규칙이 요구하는 기간 동안 제공된 서비스를 기록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그 기록보관소에 보관할 수도 있음을 인정한다.
8. 수정
- 8.1 본 계약서의 수정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문서를 작성하고 본 계약 당사자가 권한을 부여한 서명자가 이에 서명하지 않는 한, 어떠한 본 계약서의 수정도 효력을 갖지 않는다.
9. 불가항력
- 9.1 어느 당사자도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본 계약서에 근거한 의무의 이행을 지연하거나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전쟁(전쟁 선포 유무와 관계없이), 내전, 폭동, 혁명, 테러행위, 군사적 조치, 태업 그리고/또는 해적 행위;
 - (b) 폭풍우, 지진, 해일, 홍수 그리고/또는 번개 같은 자연 재해, 폭발, 그리고 화재;
 - (c) 영향 받은 당사자 또는 납품업체의 1명 이상 직원들이 또는 영향 받은 당사자의 에이전트나 일꾼이 파업 및 노동 쟁의; 또는
 - (d) 전기 통신, 인터넷, 가스 또는 전기 서비스 제공업체 같은 유틸리티 회사들의 의무 불이행.
- 9.2 의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하도급업체가 상기에 언급된 불가항력 사건들 가운데 하나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결과로 발생한 의무 불이행 또는 이행 지연으로 인해 인터택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이 지연된 경우, 이는 불가항력 사건(하기에 규정된 대로)으로 간주된다.
- 9.3 제 9.1조항에 명시된 사건(불가항력 사건)으로 인해 의무 이행이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 (a) 해당 불가항력 사건 발생과 그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한 의무 이행 지연 예상 기간 또는 의무 불이행 여부를 문서로 타방 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 (b)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또는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해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합리적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영향 받은 의무를 계속 이행하거나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그리고
 - (c) 불가항력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서비스는 계속 제공해야 한다.
- 9.4 만약 불가항력 사건이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최소한 10일전에 서면 통지서를 보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10. 책임의 한계 및 배제
- 10.1 어느 당사자도 다음 경우에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책임을 진다:
- (a) 타방 당사자 또는 그 임원들, 관리자, 직원들, 에이전트들, 또는 하도급업체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 또는
 - (b) 타방 당사자의 사기(또는 타방 당사자의 임원들, 관리자들, 에이전트들, 또는 하도급업체들의 사기)에 대해.
- 10.2 제 10.1조항에 의거하여, 계약, 불법행위(법적 의무 대안 또는 위반 포함), 또는 기타 본 계약 위반에 대한 또는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제공될 예정인 서비스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한 인터택의 최대 책임 한도는 본 계약서에 의거하여 고객이 인터택에게 지급하는 요금의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다.
- 10.3 제 10.1조항에 의거하여, 계약, 불법행위(법적 의무 대안 또는 위반 포함), 또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느 당사자도 타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이익의 손실;
 - (b) 매출 또는 사업의 손실;
 - (c) 기회의 상실(제 3자 함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d) 영업권 또는 평판의 상실 또는 손상;
 - (e) 예상 비용 절감의 손실;
 - (f) 제품 리콜과 관련해 발생된 비용 또는 경비;
 - (g) 소프트웨어, 데이터, 또는 정보 사용의 상실 또는 오염; 또는
 - (h) 간접적, 결과적 손해 징벌적 또는 특별 손해(가 가능성을 충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고객이 인터택을 상대로 제기하는 클레임(항상 제 10조에 근거해야 한다)은 반드시 고객이 해당 클레임을 일으키는 상황을 인지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90일 이내에 클레임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계약, 불법 행위, 또는 본 계약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클레임을 제기 할 수 없거나 취소불능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11. 배상
- 11.1 고객은 다음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제기된 모든 클레임, 소송, 책임(소송 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포함)에 대해 인터택, 인터택의 관리자, 직원, 에이전트, 대리인, 하도급업체, 그리고 하도급업체에게 배상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
- (a) 고객이 정부 당국 또는 사법 당국의 법률, 조례, 규정, 규칙, 또는 명령을 실제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는 그런 혐의를 받아 정부 당국 또는 다른 사람이 제기한 모든 클레임 또는 소송;
 - (b) 본 계약서에 근거하여 인터택, 인터택의 관리자, 직원, 에이전트, 대리인, 하도급업체 그리고 하도급업체가 제공한 서비스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람 또는 기업이 제기한 또는 제기하고 있는 인적 상해, 물적 손실 또는 손해, 경제적 손실, 그리고 지적재산권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클레임 또는 소송;

- (c) 제 4조에 명시된 고객 의무를 고객이 위반했다 또는 그런 혐의에 대해 제기한 클레임 또는 소송;
 - (d) 어떤 서비스의 이행, 고의적 이행 또는 미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 손해 또는 모든 종류의 경우에 대해 제 3자가 제기한 클레임, 단 어떤 한 서비스와 관련된 클레임의 총액이 제 10조에 명시된 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e) 인터택이 발행한 보고서 또는 본 계약서에 근거해 인터택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상표 포함)의 잘못 사용 또는 무단 사용으로 인해 제기된 클레임 또는 소송; 그리고
 - (f) 인터택의 보고서, 또는 인터택 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바탕으로 고객(또는 고객으로부터 인터택의 보고서를 받은 제 3자)이 작성한 보고서, 분석, 결론을 받고 제 3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클레임.
- 11.2 제 11조에 명시된 의무들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효력을 지닌다.
12. 보험
- 12.1 각 당사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 그러나, 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 이 포함된다.
- 12.2 인터택은 보험청 또는 보증인으로서 고객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명백히 부인한다.
- 12.3 고객은 비록 인터택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이 보험은 서비스 제공에 관여할 수도 있는 고객 또는 제 3자의 직원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한다. 인터택이 고객 또는 제 3자 부지에서 이행된다 하더라도, 인터택의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은 비-인터택 직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13. 계약 종료
- 13.1 본 계약은 서비스가 시작되는 첫날에 효력을 발생하며, 제 13조에 따라 종료되지 않는 한, 서비스가 제공될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 13.2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될 수 있다:
- (a)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근거해 부과된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하고, 이에 대해 타방 당사자로부터 해당 위반 사실을 수정하라고 요청한 서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상 계속 위반하는 경우;
 - (b) 고객이 대금 지급일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또는 대금 지급 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인터택이 고객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내 종료할 수 있으며;
 - (c) 타방 당사자가 채권자들과 자발적 채무조정 협의를 한 경우 또는 관재 명령을 받게 된 경우 또는 (개인이나 회사가) 도산된 경우 또는 (회사가) 청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합병 또는 구조조정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또는 자당권자가 타방 당사자의 부당산이나 자산을 점유하거나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또는 관재인이 지명된 경우,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서를 보내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 13.3 어떤 이유든지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 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구제책을 침해하지 않는 한, 고객은 종료 시점까지 인터택이 이행한 모든 서비스들에 대한 대금을 인터택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의무는 본 계약 종료 또는 만료 이후에도 효력을 지속한다.
- 13.4 본 계약이 종료 또는 만료된다고 해서 당사자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본 계약 종료 또는 만료 후에도 계속 효력을 지속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규정된 조항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14. 양도 및 하도급 계약
- 14.1 인터택은 본 계약서에 근거한 의무의 이행 및 서비스 제공을 필요할 경우 1개 이상의 계열사 그리고/또는 하도급업체들에게 위임할 권리가 있다. 또한, 인터택은 본 계약을 고객에게 통지한 후 인터택 그룹 내 회사에게 양도할 수도 있다.
15. 통지방법 및 분쟁 해결
- 15.1 본 계약서와 제안서에는 한국의 법률이 적용된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으로 인해 또는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분쟁 또는 클레임(본 계약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비-계약 클레임 포함)을 한국 법원의 배타적 관할권에 제기하기로 동의한다.
16. 기타
- 16.1 만약 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집행불가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조항은 삭제되고 나머지 조항들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며 마치 본 계약서가 무효, 불법, 또는 집행불가 조항 없이 작성된 것처럼 효력을 지닌다. 만약 무효성, 불법성, 또는 집행불가성이 너무 근본적이어서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인터택은 즉시 선의의 협상을 개시해 대안에 마련해야 한다.
- 16.2 본 계약서와 제안서에는 본 계약서에 근거해 당사자들이 취한 어떤 조치들도 당사자들 간에 동등자관계, 제휴, 공동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협조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며, 또는 어느 일방 당사자를 타방 당사자의 동반자, 파트너, 또는 법적 대리인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16.3 제 10.4조항에 의거하여,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 조항을 엄격하게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리나 구제책을 행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권리포기로 간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가 축소되지 않는다. 계약 위반에 대해 권리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이를 다음 번 계약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 16.4 본 계약서에 근거한 권리 또는 구제책을 포기하는 것은 문서로 권리 포기를 명시하고 타방 당사자에게 전달하지 않는 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 16.5 본 계약서 및 제안서는 본 계약서에서 고려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당사자간 완전 합의의 담고 있으며, 본 거래와 관련하여 또는 해당 주제와 관련하여 당사자간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합의, 약정, 그리고 이해를 대체한다. 어떠한 구매 주문서, 진술서, 또는 그 밖의 유사한 문서들도 본 계약 조건에 추가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지 못한다.
- 16.6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계약을 승인 또는 서명하기 전에 타방 당사자가 또는 타방 당사자를 대신해 진행한 모든 진술, 보증, 담보 계약 또는 그 밖의 다른 약속(본 계약서에 명시된 또는 언급된 것들 제외)에 의존하지 않았음을 인정한다. 각 당사자는 본 조항을 제외하고 모든 진술, 보증, 담보 계약, 또는 그 밖의 다른 약속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할 수도 있는 모든 권리와 구제책들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 16.7 본 계약서의 어떤 조항도 거짓 허위 진술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거나 배제한다.
- 16.8 제 3자 권리
- 16.8 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본 계약 조건을 집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지 않는다. 추가 약속
- 16.9 각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근거한 의무들을 실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청할 때마다 타방 당사자의 비용 부담 하에 이러한 증거들과 문서들을 작성해 전달하고 이에 합당한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